

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I (손해사고기준)

계약번호 :

82305996209000

계약자	라온커머스 주식회사	계약자번호	124-87-12555
	(06194) 서울 강남구 삼성로85길 *****		
피보험자	라온커머스 주식회사	피보험자번호	124-87-12555
보험기간	2023.09.09 24:00 ~ 2024.09.09 24:00	청약일	2023.09.08
첫회보험료	3,456,300 원 (1회 /일시납)	총보험료	3,456,300 원

기타사항

피보험자관계	본인	별첨서류여부	아니오
최초공시여부	아니오	변경공시여부	아니오

계약관련자

계약관련자	계약관련자번호	계약관련자명
피보험자	124-87-12555	라온커머스 주식회사

추가기재사항

**제품

클렌징워터, 콜라겐크림, 마스크팩, 립앤아이리무버, 알로에보습제, 폼클렌징 등
화장품

※ 보험증권은 계약체결의 증거로 발행되는 것이며, 실제 계약내용은 계약청약서 및 보험약관을 따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험증권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회사 소정의 납입영수증이 발급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우리회사는 보험계약자와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보험증권은 2023년10월06일 경기GA.3지점 에서 발급하였습니다.
이 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대표이사
사 장

洪元學



삼성화재

대한민국정부
인자세100원
서초세무서장
후납승인
2016년 34017호

삼성화재 경기GA.3지점, 보험대리점 케이지에이에셋(주) (임형진)

Tel : 010-8552-4918/010-8552-4918 [협회등록번호 : 19990670030044]

mail :

발행일: 2023-10-06 14:16:25

[페이지 2/2]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우리회사는 보험계약자와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 까지 보호합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

장기보험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당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또는 음성녹음)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과거의 질병 및 치료사실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3. 청약서 사본 및 보험약관 수령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는 청약서 사본과 보험약관을 수령하셔서, RC(Risk Consultant)등이 설명한 보장내용, 보험상품, 보험기간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5. 계약의 무효

-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②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 ③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④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단, 약관상 보장된 사망은 제외)

6. 유의사항

담당RC(Risk Consultant)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청약서의 내용을 고객님의게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보험가입 내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콜센터나 담당RC(Risk Consultant)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통신판매 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 43조에 의거하여 음성녹음으로 자필서명을 대체합니다. 이는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만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자필서명 또는 음성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1. 보상하는 내용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 I (책임보험)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 II (책임초과)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그 손해가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보상

2. 유의사항

- ① 회사의 보상 책임은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시작되고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의무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회사의 보상 책임은 회사가 보험료를 받을 때(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회사가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 첫날 0시)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입니다.
- ② 보험계약 체결시 받으신 약관의 내용을 읽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가입하신 담보 및 특약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꼭 이행하여야 할 사항(알릴 의무, 사고발생의 통지 등)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보험법칙은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법칙을 교전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법칙신고

금융감독원	1588-3311	www.fss.or.kr
삼성화재	02-7573-112	www.samsungfire.com

1588-5114
samsungfire.com

삼성화재 고객센터

사고접수, 보험가입안내, 보험상담, 계약상태 확인, 고객 의견 접수, 기타 보험에 관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인터넷 금융서비스

보험계약조회 및 변경(주소, 자동차번호 등), 계약관련 증명서 출력, 대출가능금액 조회 및 원금리 신청

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I (손해사고기준)

계약번호 :

82305996209000

계약자	라운커머스 주식회사	계약자번호	124-87-12555
	(06194) 서울 강남구 삼성로85길 *****		
피보험자	라운커머스 주식회사	피보험자번호	124-87-12555
보험기간	2023.09.09 24:00 ~ 2024.09.09 24:00	청약일	2023.09.08
첫회보험료	3,456,300 원 (1회 /일시납)	총보험료	3,456,300 원

가입내역

목적물	목적물명	제품 (생산물)		
	소재지	(06194)서울 강남구 삼성로85길 32 6층, 7층, 8층 (대치동,동보빌딩)		
	제품종류구분코드	바디클렌저 및 오일, 각질제거제, 헤어 트리트먼트제품등	보험료기초종류	매출액
	보험료기초값	9,313,024,153	사업구분코드	완성품제조업자
	재판관할법원명	대한민국	제품구분코드	제품(식품제외)
	음식구분코드	할인할증비대상		

보장조건	화폐	보장/공제금액	보험료
생산물 대인대물일괄 (사고당 보상한도)	KRW	1억	3,456,300
생산물 대인대물일괄 (총보상한도)	KRW	1억	
생산물 대인대물일괄 (사고당 자기부담금)	KRW	30만	
보험료합계			3,456,300

사용된약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I (손해사고기준) 보통약관

품질저하부담보 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특별약관

정보기술 추가약관 (사이버위험 보상제외 추가약관)

기타사항

갱신계약여부	예	전계약번호	82214963623000
정산대상코드	아니오	납입주기	일시납
다른보험가입여부	아니오	연간구간구분	연간계약

우리회사는 보험계약자와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보험증권은 2023년10월06일 경기GA.3지점 에서 발급하였습니다.
이 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대표이사
사 장

洪元學



삼성화재

대한민국정부
인지서100원
서초세무서장
후납승인
2016년 34017호

삼성화재 경기GA.3지점, 보험대리점 케이지에이에셋(주) (임형진)

Tel : 010-8552-4918/010-8552-4918 [협회등록번호 : 19990670030044]

mail :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우리회사는 보험계약자와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 까지 보호합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

장기보험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당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또는 음성녹음)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과거의 질병 및 치료사실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3. 청약서 사본 및 보험약관 수령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는 청약서 사본과 보험약관을 수령하셔서, RC(Risk Consultant)등이 설명한 보장내용, 보험상품, 보험기간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됩니다.

5. 계약의 무효

-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②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 ③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④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단, 약관상 보장된 사망은 제외)

6. 유의사항

담당RC(Risk Consultant)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청약서의 내용을 고객님의게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1. 보상하는 내용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 I (책임보험)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 II (책임초과)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그 손해가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보상

2. 유의사항

- ① 회사의 보상 책임은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시작되고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의무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회사의 보상 책임은 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회사가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 첫날 0시)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입니다.
- ② 보험계약 체결시 받으신 약관의 내용을 읽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가입하신 담보 및 특약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꼭 이행하여야 할 사항(알릴 의무, 사고발생의 통지 등)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1588-3311	www.fss.or.kr
삼성화재	02-7573-112	www.samsungfire.com

- ※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보험가입 내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콜센터나 담당RC(Risk Consultant)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통신판매 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 43조에 의거하여 음성녹음으로 자필서명을 대체합니다. 이는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만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자필서명 또는 음성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1588-5114
samsungfire.com

삼성화재 고객센터

사고접수, 보험가입안내, 보험상담, 계약상태 확인, 고객 의견 접수, 기타 보험에 관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인터넷 금융서비스

보험계약조회 및 변경(주소, 자동차번호 등), 계약관련 증명서 출력, 대출가능금액 조회 및 원금리 신청